소비자법연구 게재논문 심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비자법연구 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사기준)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

준으로 심사한다.

1. 주제의 적합성

2. 논문의 논리성

3. 논문의 명료성

4. 논문의 충실성

5. 투고규정의 준수성

6.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

제3조(심사의뢰)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, 투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다.

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 등을 발표한 자로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대학교의 전임교원

2.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

3. 변호사 등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자

4.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

③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.

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.

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, 투고논문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함께 송부한다.

1. 소비자법연구 게재신청 및 원고작성지침

2. 소비자법연구 연구윤리규정

3. 심사표

제4조(논문심사)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,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불가를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, 심사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, 심사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.

③ 논문이 소비자법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,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.

제5조(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) ① 편집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, 투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.

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수정없이 게재

2. 수정후 게재

3. 수정후 재심사

4. 게재불가

③ 심사위원별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는 저자에게 공개하되 심사위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다.

제6조(논문의 재심사) 수정후 재심사 통지를 받은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7조(이의신청) ① 투고자는 제5조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, 편집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.

제8조(게재 및 게재취소) ①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결정을 받거나 수정후 게재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시기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한다. 다만,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사항이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.

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받은 최종 논문을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한다. 다만,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다음 호에 게재한다.

③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게재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논문을 게재한다.

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소비자법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게재를 취소한다.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그 다음호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, 게재를 취소한다.

제9조(온라인 발행) 소비자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한국소비자법학회 홈페이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논문의 저작권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
부 칙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